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인곤 외 2명 소유물건
(2024타경7808)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서동제

감정평가서번호: JY241226-1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영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백한승

(인)

감정평가액	일십칠억사천팔백삼십칠만오천원정(₩1,748,375,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서동제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경매6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인곤 외 2명 (2024타경780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2.27	2024.12.26 ~ 2024.12.27	2025.01.0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8,642	토지	8,807	-	1,748,375,000
	토지	480 x $\frac{48}{480}$				
	토지	1162 x $\frac{117}{1,162}$				
합계					₩1,748,37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소재 "여차마을회관" 남서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의뢰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3.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2024년 12월 26일 ~ 2024년 12월 27일임.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년 12월 27일로 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 기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음.

나. 토지의 평가방법

본건의 토지(이하 '대상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일까지의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5. 기타 참고 사항

- ① 본건 토지 일련번호3,4는 지목 "임야" 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바, 현황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② 본건 토지 일련번호3,4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자 조지숙 소유지분은 위치확인이 불가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
- ③ 본건 토지 지상의 자연생 수목 등은 경제적 가치 및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평가액의 산출근거

II-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

1. 대상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개별지가 (원/㎡)	비고
1	상동면 여차리 1037-1	전	6,901	보전관리	휴경지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30,800	-
2	상동면 여차리 1037-31	전	1,741	보전관리	휴경지	맹지	사다리 완경사	28,800	-
3	상동면 여차리 1037-11	임	480 중 48/480	보전관리	도로등	-	부정형 완경사	3,720	조지속 지분
4	상동면 여차리 1037-13	임	1,162 중 117/1162	보전관리	도로등	-	부정형 완경사	3,720	조지속 지분

2. 비교표준지 선정

가. 비교표준지

[공시기준일: 2024.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비고
A	상동면 여차리 957-5	전	1,430	보전관리	전	소로한면	사다리 평지	143,700	-

나.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 A** 를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 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시군구	용도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경상남도 김해시	보전관리지역	2024.01.01 ~ 2024.12.27	1.753 (1.01753)	2024.01.01 ~ 2024.11.30 : 1.637 2024.11.01 ~ 2024.11.30 : 0.127 $(1 + 0.01637) * (1 + 0.00127 * 27/30) \approx 1.01753$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하여 최근 발표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하여 적용하였음.

4.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비교치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가. 개별요인 비교 항목

조 건	항 목 (농경지대)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자연조건	일조,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등
획지조건	면적, 경사, 경작의 편부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나.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치
1	A	0.90	0.98	0.90	1.00	1.00	0.794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인근환경 등), 획지조건(형상 및 경사 등)에서 열세함.						
2	A	0.85	0.98	0.90	1.00	1.00	0.750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인근환경 등), 획지조건(형상 및 경사 등)에서 열세함.						
3,4	A	0.95	1.00	1.00	1.00	0.33	0.314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기타조건(도로 등)에서 열세함.						

※ 누계치 = 접근조건 x 자연조건 x 획지조건 x 행정적조건 x 기타조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요인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그 밖의 요인”이란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근의 정상거래사례나 평가선례 등에 기초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게 되며,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나. 격차율 산정식

$$\frac{\text{사례기준 비교표준지가격}}{\text{기준시점 비교표준지가격}} = \frac{\text{사례단가(원/m}^2\text{)}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표준지/사례)}}{\text{표준지공시지가(원/m}^2\text{)} \times \text{시점수정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가격 자료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	토지단가 (원/㎡)	비고
#1	여차리 000-0	보전관리	전	436	2023.12.12	92,400,000	211,927	-

2) 인근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평가 목적	비고
#2	여차리 0000-00	보전관리	임	전	2024.06.10	237,000	법원경매	-
#3	여차리 0000-0	보전관리	전	전	2024.01.26	236,000	담보	-

3)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출처 :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지가수준	비고
보전관리	휴경지	세로(불)	180,000 원/㎡ ~ 220,000 원/㎡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1) 비교사례 선정

상기의 가격 자료 중 비교적 최근의 사례로서, 인근의 최근시세가 반영되고, 본건 및 표준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동일·유사하며, 위치적·물적 유사성 등이 인정되는 사례 기호 "#2" 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평가 목적	비 고
#2	여차리 0000-00	보전관리	임	전	2024.06.10	237,000	법원경매	-

2) 격차율의 산정

구분	토지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가액 (원/㎡)	격차율
사례(#2)기준 표준지(A)가액	237,000	1.01123	1.00	1.070	256,438	1.754
기준시점 표준지(A)가액	143,700	1.01753	-	-	146,219	

- 시점수정 : 2024.06.10 ~ 2024.12.27 경상남도 김해시 보전관리지역 지가변동률 적용.
- 지역요인 :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함.
- 개별요인:

구분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치
표준지A /사례#2	1.07	1.00	1.00	1.00	1.00	1.070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인근지역의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산정된 격차율을 참작하여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 보정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A:1.75**)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의 시산가액을 산정함.

일련 번호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원/㎡)
1	143,700	1.01753	1.000	0.794	1.75	203,171	203,000
2	143,700	1.01753	1.000	0.750	1.75	191,913	192,000
3,4	143,700	1.01753	1.000	0.314	1.75	80,347	8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1. 비교사례의 선정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상기의 거래사례 중 기호 "#1" 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면적(m ²)	거래시점	거래금액	토지단가(원/m ²)	비고
#1	여차리 000-0	보전관리	전	436	2023.12.12	92,400,000	211,927	-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상기의 거래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사정보정치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 수정

당해지역의 지가변동 추이가 적정 반영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결정함.

시군구	용도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경상남도 김해시	보전관리지역	2023.12.12 ~ 2024.12.27	1.808 (1.01808)	2023.12.01 ~ 2023.12.31 : 0.083 2024.01.01 ~ 2024.11.30 : 1.637 2024.11.01 ~ 2024.11.30 : 0.127 $(1 + 0.00083 * 20/31) * (1 + 0.01637) * (1 + 0.00127 * 27/30)$ ≒ 1.01808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하여 최근 발표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하여 적용하였음.

4.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비교치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일련 번호	거래 사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치
1	#1	1.05	0.98	0.90	1.00	1.00	0.926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인근환경 등) 및 획지조건(형상 및 경사 등)에서 열세함.						
2	#1	1.00	0.98	0.90	1.00	1.00	0.882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 및 획지조건(형상 및 경사 등)에서 열세함.						
3,4	#1	1.10	1.00	1.00	1.00	0.33	0.363
	대상토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기타조건(도로 등)에서 열세함.						

※ 누계치 = 접근조건 x 자연조건 x 획지조건 x 행정적조건 x 기타조건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사례 기호	사례토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원/㎡)
1	#1	211,927	1.000	1.01808	1.000	0.926	199,793	200,000
2	#1	211,927	1.000	1.01808	1.000	0.882	190,299	190,000
3,4	#1	211,927	1.000	1.01808	1.000	0.363	78,320	7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3. 토지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시산가액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결정단가 (원/㎡)
1	203,000	200,000	203,000
2	192,000	190,000	192,000
3,4	80,000	78,000	80,000

2. 토지평가액의 결정

평가목적, 대상토지의 특성,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와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등을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37-1	전	보전관리지역	6,901	6,901	203,000	1,400,903,000	
2	동소	1037-31	전	보전관리지역	1,741	1,741	192,000	334,272,000	
3	동소	1037-11	임야	보전관리지역	48 480 x --- 480	48	80,000	3,840,000	조지속지분
4	동소	1037-13	임야	보전관리지역	117 1,162 x --- 1,162	117	80,000	9,360,000	조지속지분
합 계								₩1,748,375,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소재 "여차마을회관"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전원주택부지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 공히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상태임.
일련번호 3,4 : 공히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3,4가 포함된 현황 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일련번호 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일련번호3,4는 지목 "임야" 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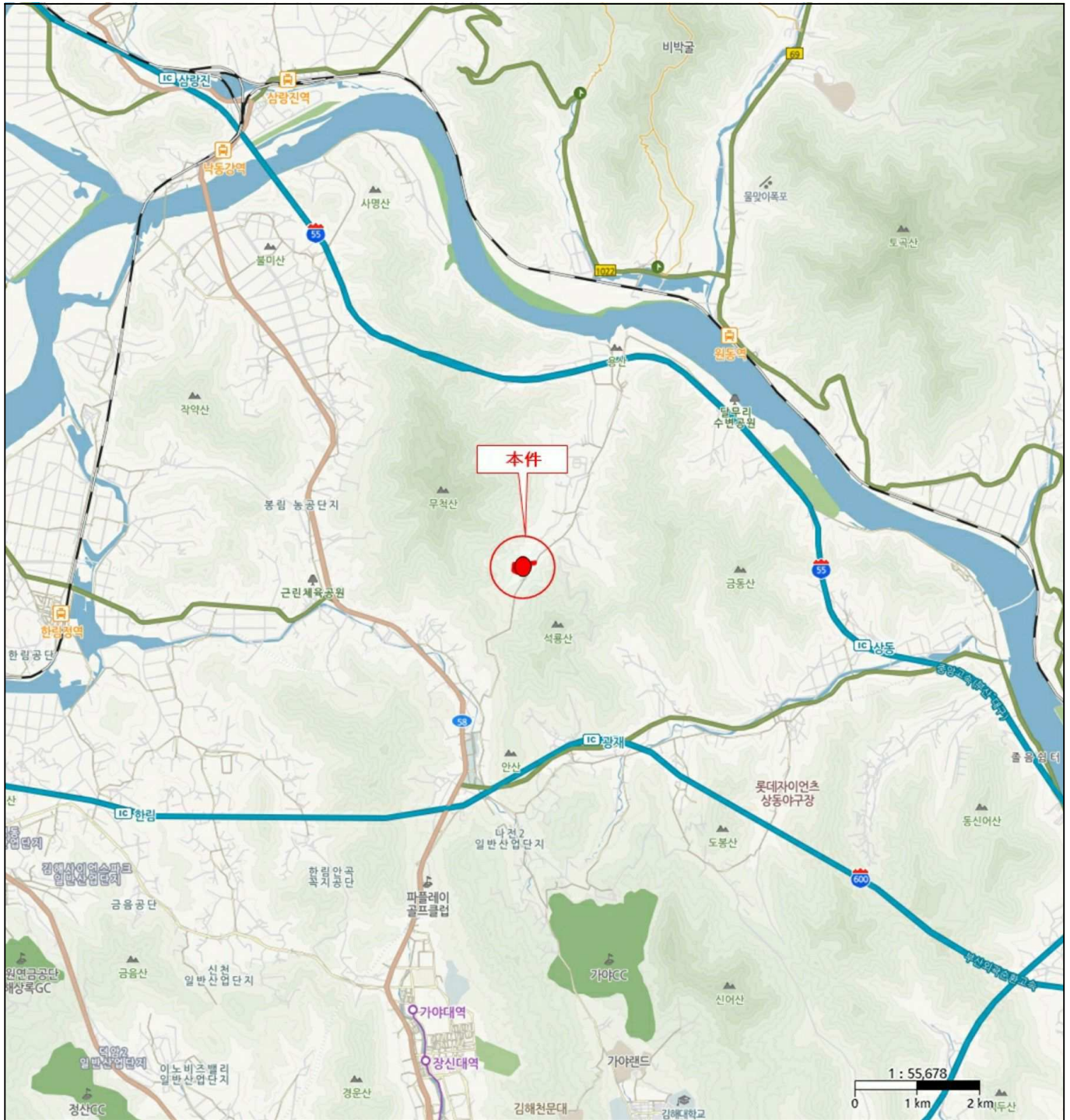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임대관계 : 미상임.
- 2)기타 : 본건 토지 일련번호3,4는 공유지분 토지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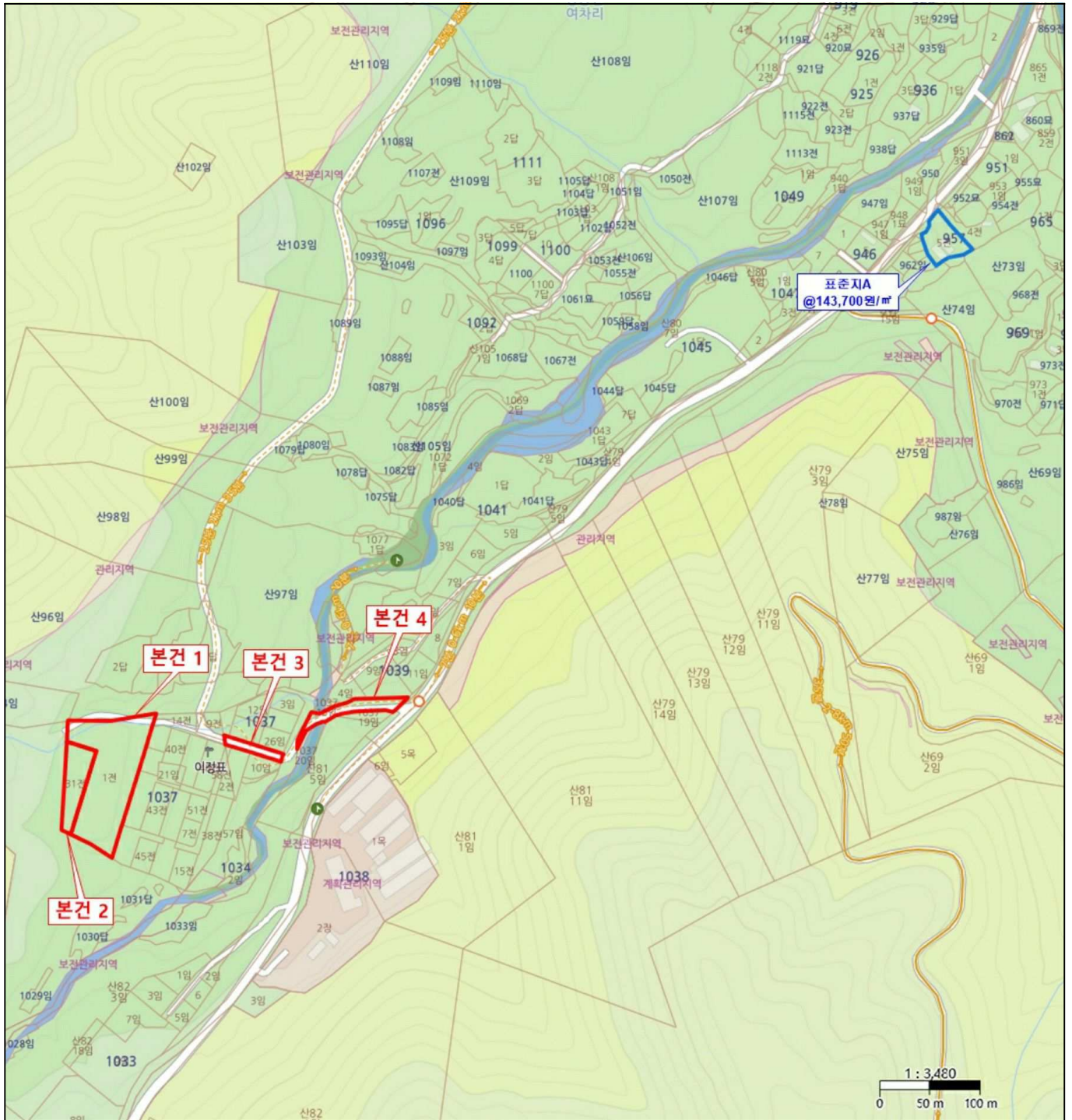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37-1외



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37-1외





1



1



1



1



1, 2



1, 2



3



3



4



4